

예산총칙

2023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24,851,806	21,745,554
일반회계	655,999,040	19,679,971
특별회계	68,852,766	2,065,583
공기업특별회계	58,770,734	1,763,122
상수도공기업	32,789,327	983,680
하수도공기업	25,981,407	779,442
기타특별회계	10,082,032	302,461
의료급여기금운영	778,152	23,345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689,702	20,691
농공지구조성사업	5,463,744	163,91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77,182	5,315
수질개선	579,172	17,375
주택사업	2,005,241	60,157
기반시설	16,695	501
장기미집행	372,144	11,164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447,692 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포함)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8,000,000 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